



PwC 베트남 뉴스레터

상품 원산지에 대한 신규 규정





At a glance

“

지난 5월, 산업통상부(MoIT)는 기준 시행령 31/2018/NĐ-CP를 대체하기 위해 상품 원산지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제공하는 시행령의 두 번째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국제 무역 환경에서 중요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5월 23일, MoIT의 수출입 부서는 초안에 대한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피드백을 수집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시행령 초안의 몇 가지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령 초안의 새로운 내용

01

시행령 초안은 수출 상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생산하는 중간 재료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규정에 따라, 비원산지 재료는 후속 제품 제조업체에서 생산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산지 규칙을 충족하는 공정을 거치는 경우 후속 제품 제조에 사용될 때 원산지 재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03

시행령 초안은 또한 비즈니스 프로필 및 원산지 증명서 신청 서류와 관련된 일부 조항을 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 초안은 원산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의 책임과 전자 통관 시스템의 데이터를 MoIT와 공유하는 재무부의 책임을 확대합니다.

02

HS 코드 전환 기준(De Minimis)을 충족하지 못하는 재료의 비율과 관련하여 초안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상품 세트에 대한 새로운 조항을 추가합니다:

- 세트 내의 모든 구성 상품이 HS 품목분류의 제3조 규칙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는 경우, 상품 세트는 또한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됩니다.
- 세트에 원산지 상품과 비원산지 상품이 모두 포함된 경우, 비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세트 총 가치의 15%를 초과하지 않으면 해당 세트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됩니다.



Contact us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자문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guyen Huong Giang
Partner
n.huong.giang@pwc.com



박준형 – 호치민 사무실
Director, Korean CPA
+84 (28) 3823 0796 Ext. 4611
park.junhyung@pwc.com



Richard Irwin
Partner
r.j.irwin@pwc.com



김민걸 – 하노이 사무실
Manager, Korean CPA
+84 (24) 3946 2246 Ext. 1011
kim.mingul@pwc.com



www.pwc.com/vn

©2025 PwC Tax and Advisory (Vietnam) Company Limited.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Vietnam member firm,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